

인천광역시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4. 03. 14(금)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 2014. 02. 28
- 나. 제안자 : 인천광역시장
- 다. 회부일자 : 2014. 03. 04
- 라. 상정일자 : 2014. 03. 14(제214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 제안설명 : 오병집 안전행정국장
- 검토보고 : 왕동항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 질의 및 토론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지방세기본법령(2013.1.1.) 개정으로 상위법에서 위임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지급대상·기준·방법 등을 명확히 하여 포상금 관련 조례를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함.

나. 주요골자

- 포상금 지급대상(안 제2조)
- 포상금 지급기준 및 한도(안 제3조 및 안 제4조)

- 1년 이상 경과한 세원을 발굴한 자 :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 과년도 체납액 징수 체납연차 및 징수액을 기준으로 지급
(1년차 100분의 1, 2년차 100분의 3, 3년차 이상 100분의 5)
 -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 : 건당 30만원 한도
- 신고처리 등(안 제5조)
 - 포상금 지급심사 및 지급신청(안 제6조 및 안 제7조)
 - 포상금 지급 및 환수(안 제8조 및 안 제9조)
 - 관련대장 및 보안유지(안 제10조 및 안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지방세기본법」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지방세 징수포상금 제도의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지급대상 및 기준과 관련 절차를 상위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 보완하는 사항임.
- 안 제3조(지급기준) 제1호에서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포상금 산정기준을 「지방세기본법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지급률을 적용하도록 하면서, 동 시행령에서 단서로써 지급한도(3천만원)를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반영하지 않은 바, 운영상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포상금의 지급심사 및 신청, 지급절차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서는 포상금을 지급 신청하는 경우,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의 사전심사 및 의결을 받아, 심의 의결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8조에서 포상금 지급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바,

- 동일 위원회로부터 심의를 2회에 걸쳐 받도록 강화한 사유와 위원회가 업무관련 공무원으로만 구성되고 인원이 소수인 점을 감안할 때 절차상 행정력낭비의 요인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차준택 위원>

- 지급한도 3천만원은 시행령에 있어서 명시하지 않은 것인가?
⇒ 그러함.
- 심사를 실제로 두 번 하려는 것인가?
⇒ 전문위원 검토사항과 같이 한번만 하는 것이 좋을 듯 함.
- 8조 단서조항은?
⇒ 하반기 심사사항은 다음연도에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자 함.
- 4분기분은 다음연도에 줄 수 있다고 하지만 예산편성의 의미에 따라 예산 범위내 지급이 맞는 듯?
⇒ 포상금 지급목적은 격려 차원도 포함하고 민간분야에 지급되는 부분도 있어서 예산 없다는 이유로 지급 못하면 행정의 신뢰성 측면에서 부정적 면 있음. 운영단계에서 고려하도록 하겠음.

<이상철 위원>

- 제6조에 위원회 사전심사, 의결 조항 있는데 8조에서 지급신청이 있을 때 다시 심의를 거쳐야 하는가?
⇒ 시정이 필요한 부분임.

5. 토론요지

가. 찬성 : 없음

나. 반대 : 이용범, 차준택, 류수용, 이강호, 이상철, 홍성욱 위원

6.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6명, 찬성 : 6명, 반대 : 0명)

《수정내용》

- 안 제8조제1항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삭제함.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 붙임

1. 인천광역시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 대비표 1부. 끝.
3. 인천광역시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8조제1항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삭제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8조(포상금의 지급)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u>위원회의 심의를 거쳐</u> 신청일 다음 달 말일까지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의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 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8조(포상금의 지급)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일 다음 달 말일까지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의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 할 수 있다. ②~③ (개정안과 같음)

인천광역시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3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인천광역시세(이하 “시세”라 한다)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시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4.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5. 제1호부터 제4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지방세의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3조(지급기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 : 「지방세기본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10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지급률을 적용한 금액
2.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 :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시세 세원을 찾아 부과·징수한 경우에는 징수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3.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 가. 과년도 체납액 중 1년 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나. 과년도 체납액 중 2년 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 다. 과년도 체납액 중 3년 차 이상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4.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 :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 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조(지급한도)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부과기준에 따른 체납액징수 1건당 30만원(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분기지급액 300만원

- 제5조(신고처리 등) 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제보나 신고(이하 “신고 등”이라 한다)는 군수·구청장이 처리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제1항에서 시장이 직접 부과·징수하는 시세의 경우에는 시장이 처리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탈루세액 등의 제보는 별지 제1호 서식, 체납자의 은닉재산의 신고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③ 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신고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등 불충분한 경우 해당 제보자나 신고자에게 보다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 등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④ 군수·구청장은 신고 내용에 대한 최종 처리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제4호 서식과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지급심사 등) ① 포상금은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사전심사, 의결을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군·구 소속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심사는 해당 군·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안전행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예산담당관, 총무과장, 세정과장, 회계과장이 되며 간사는 체납정리업무담당이 된다.
-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포상금의 지급 대상 및 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의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
 3. 특별한 공적의 심사에 관한 사항
 4. 포상금 지급 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 ⑤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지급신청 등) ①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심의 의결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군·구 공무원의 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하여는 군수·구청장이 해당 군·구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일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포상금지급신청은 별지 3호 서식부터 제5호 서식에 의한다.
③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수·구청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금의 지급)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일 다음 달 말일까지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의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 할 수 있다
② 포상금은 지급대상의 해당 징수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수령자가 금융기관에 개설한 예금 계좌에 이체 입금 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9조(포상금의 환수) ① 시장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 처분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한다.

-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거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한 날부터 환수 결정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시행령 제65조에 따른 이자율로 계산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10조(대장비치) 세입금 부과·징수 부서는 세입징수포상금 신청 및 지급과 관련하여 별지 제6호 서식부터 별지 제10호 서식까지의 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제11조(보안유지) 시장은 신고자 등의 신원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포상금 지급이 확정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지 제1호 서식)

탈루세액 등 자료 제보서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접수방식
-------	--	------	--	------

1. 제보자 인적사항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 :
- 주소 :

2. 피제보자 인적사항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주소 :
- 사업장소재지 :

3. 제보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

년 월 일

제보자 : (인)

귀하

처리자 : 직급	성명	(인)	결재	담당자	담당	과장

(별지 제2호 서식)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서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접수방식		
<p>1. 신고자 인적사항</p> <p><input type="radio"/> 성명 : <input type="radio"/> 주민등록번호 :</p> <p><input type="radio"/> 전화번호 :</p> <p><input type="radio"/> 주소 :</p> <hr/> <p>2. 피신고자 인적사항</p> <p><input type="radio"/> 성명 : <input type="radio"/> 주민등록번호 :</p> <p><input type="radio"/> 상호 : <input type="radio"/> 사업자등록번호 :</p> <p><input type="radio"/> 주소 :</p> <p><input type="radio"/> 사업장소재지 :</p> <hr/> <p>3. 은닉재산 신고내용</p> <p>※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신고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p>						
<p>년 월 일</p> <p>신고자 : (인)</p> <p>귀하</p>						
처리자 : 직급 성명 (인)			결재	담당자	담당	과장

(별지 제3호 서식)

탈루세액 등에 대한 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제 보 내 용	제 출 일 자		제 출 부서	
	제 보 내 용 요 약			
통지 받은 탈루세액 등	탈 루 세 액 등			
포 상 금 신 청	금 액			
	산 출 근 거			
계좌 신고	금 융 기 관		통장용 인감	
	계좌 번호			
「인천광역시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귀하				
첨 부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증 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별지 제4호 서식)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신 고 내 용	제 출 일 자	제 출 부 서	
	신 고 내 용 요 약		
통 지 받 은 징 수 액	징 수 액		
포 상 금 신 청	금 액		
	산 출 근 거		
계좌 신 고	금 융 기 관	통장용 인감	
	계좌 번 호		
「인천광역시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체납자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귀하			
첨 부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증 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별지 제5호 서식)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개인별)

수신 :

참조 :

(단위 : 원)

구 분	건 수	징 수 액			포 상 금
		합 계	분 세	가 산 금	
합 계					
벼 려 지 거 나 숨 은 세 원 발 굴					
과 년 도 체 납 액 징 수	소 계				
	1 년 차				
	2 년 차				
	3 년 차 이 상				
지 방 세 특 별 한	징 수 에 공 적 등				

붙임 : 세부징수내역 등 증빙자료

「인천광역시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별지 제6호 서식)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총괄)

수신 :

참조 :

발신 : (이) [1]

(단위 : 원)

구 분	건 수	징 수 액			포 상 금
		합 계	본 세	가 산 금	
합 계					
탈 루 세 액 등 제 보					
체 납 자 은 낙 재 산 신 고					
버 려 지 거 나 숨 은 세 원 발 굴					
과 년 도 체 납 액 징 수	소 계				
	1 년 차				
	2 년 차				
	3 년 차 이				
지 방 세 특 별 하	징 수 예 공 적 등				

(별지 제7호 서식)

탈루세액 등 제보 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 월)

(별지 제8호 서식)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 원)

신고자		징수내역				체납자		징수일자	포상금액	포상금지급일	담당확인
성명	주민번호	년도납기	과세번호	세목	징수액	성명	주민번호				

(별지 제9호 서식)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 원)

부과자(제보자)		부과 징수내역				납세의무자		징수일자	포상금액	포상금지급일	담당확인
직급	성명 (주민번호)	년도 납기	과세 번호	세 목	징수액	성명	주민 번호				

(별지 제10호 서식)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 원)

징수월일	징수자		징수내역				체납자		특별징수 공적사유	포상 금액	포상금 지급일	담당 확인
	직급	성명	구분	년도 납기	과세 번호	세 목	징수액	성명	주민 번호			

※ “구분”란에는 과년도 체납액 경과연수(1년 차, 2년 차, 3년 차)를 표시